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5. 3. 27.

운영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3월 10일

나. 발의자: 이규선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5년 3월 20일

라. 상정일자: 제25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2025. 3. 25.)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 가.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의원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3항)
-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5항)
- 조례 용어의 통일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류데레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과보고서·예산사용내역서의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에 관한 사항을 의무화함으로써 의원연구활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의원연구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2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제3항은 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시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및 예산사용내역서도 함께 첨부하도록 의무화함. 제5항은 연구활동·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자체없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 검토 결과
  - 2019년 7월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6조(지방의회 의무 등)제2항에서는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가 제정(2019.1.0.17.)되었음.
  - 한편, 2023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능·권한의 확대에 따라 부패 발생 가능성 증대 ▲지방자치단체의 고질적 부패행위에 대한 근원적 진단·처방 요구 ▲자치법규에 숨겨진 불폐·불공정·규제를 유발하는 규정 개선의 사유로 61개 자치구(집행기관 및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권고 사항을 공문(부패영향분석과-4666)으로 보내왔음.
  - 이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를 첨부하고, 해당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명문화함으로써 지방의원의 연구단체 활동의 책임성과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구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86
------------	-----

발의연월일: 2025. 3. .

발의자: 이규선、전승관、김지연  
이순우、신흥식、정선희  
의원 (6인)

###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결과보고서 제출 및 홈페이지 공개를 의무화 함으로써 의원 연구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3항)
- 나. 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제5항)
- 다. 조례 용어의 통일

### 3. 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 다. 입법예고: 생략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영등포구 연구단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고서**”를 “**결과보고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자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  ② (생 략)  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u>영등포구 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3. (생 략)  4. 연구활동 <u>보고서</u>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생 략)  ② (생 략)</p> <p>제12조(<u>연구활동 보고서 등의 제출</u>) ① (생 략)  ② 연구단체 대표자는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과 연구활동 <u>보고서</u>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연구단체</u> -----  -----  -----  ---.</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  -----  ---.  1. ~ 3. (현행과 같음)  4. ----- <u>결과보고서</u>-----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2조(<u>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등의 제출</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결과보고서</u>-----  -----.  ③ <u>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u></p>

할 때에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신 설>

④ ----- 제2항-----  
-----  
-----  
-----  
-----  
-----  
-----.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승인한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지체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연구활동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연구내용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활동비	수령액	금 원(₩)					
	집행액	금 원(₩)					
	잔 액	금 원(₩)					
	집행내역	자료수집 및 조사비		금 원(₩)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금 원(₩)			
		전문가 활동 경비		금 원(₩)			
		기 타		금 원(₩)			
특기사항		“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					

- 붙임 1.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대표 :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귀하